

2018

Report

of Trend



2018

정부 및 수도권 지자체

규제완화 정책

동향보고

2018.07. part1 제 101 호

Contents

I . 정부 추진동향

- 1. 수도권 쓸림현상 막는다... “공장 등 인구집중유발시설 규제” 3
- 2. '지역이 강한 나라'!...9 월 6·8 일 균형발전박람회 개최 4
- 3. 지자체 18 곳 , 지방세 비율 높이면 오히려 재정 수입 줄어 5

II . 수도권 추진동향

- 1. 국내 복귀기업 경자구역 혜택 수도권 족쇄 'IFEZ' 찬밥신세 ? 6

1. 수도권 쏠림현상 막는다...“ 공장 등 인구집중유발시설 규제”

01

개요

보도형식	언론기사	보도일자	2018.07.05
보도대상	전국	보도매체	dongA.com 비즈 N

02

주요내용

■ 수도권정비법 개정안 공포, 인구집중유발시설 총허용량·산출근거 명시

- 정부가 수도권 쏠림현상을 막기 위해 무분별한 인구집중유발시설 (인구집중시설) 규제 강화에 나섬
- 5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수도권 인구집중시설 설립허용을 제한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(수도권정비법) 개정안을 공포
 - 인구집중시설이란 학교, 공장, 공공청사, 업무용 건축물, 판매용 건축물, 연수 시설 등 인구 집중을 유발하는 시설
 - 세부적으로 '고등교육법' 상 대학, 연면적 500㎡ 이상 공장, 연면적 1000㎡ 이상 공공청사, 연면적 3000㎡ 이상의 연수시설 등이 여기에 해당
- 정부 관계자
 - 종전 수도권정비법의 경우 인구집중시설의 신설과 증설에 대한 총량규제 제도를 두고 있었지만 매년 과도한 총허용량을 정해 실제로 총량규제가 유명무실한 상황
 -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
- 앞서 국회와 정부 안팎에선 총허용량 산정 과정에서 비공개로 수도권 내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개발계획을 대부분 반영함으로써 총허용량 결정의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음
- 실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12년 간 정부의 인구집중시설 총허용량은 35㎞로 실제 공장개발면적 (24k㎞) 보다 1.4배 더 많아 규제의 실효성이 전무
 - 부실한 총허용량 탓에 이 기간 수도권 내 신설된 공장이 여의도 면적의 3배에 육박한 셈
- 이에 따라 새로 시행되는 수도권정비법 18조 1항엔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구집중시설의 신설이나 증설의 총허용량을 정하되 그 총허용량과 그 산출 근거를 고시하도록 명시
- 최초 법안을 발의한 이헌승 자유한국당 의원
 - 수도권 과밀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정비법상 규제의 실효성이 담보될 필요가 있었음
 - 수도권 총량규제 산출근거와 개발허가 통계의 집계·공개가 의무화돼 앞으로 국민의 감시 속에 무분별한 수도권 개발이 제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

2. '지역이 강한 나라'...9월 6·8일 균형발전박람회 개최

01

개요

보도형식	언론기사	보도일자	2018.07.08
보도대상	전국	보도매체	연합뉴스

02

주요내용

■ 모든 지역이 골고루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정책을 소개하는 행사가 열림

-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7개 시·도와 오는 9월 6~8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'2018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'를 개최
- 지역혁신과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정책을 논의하고 사례를 공유하는 행사로 2004년 지역혁신박람회를 시작으로 매년 열렸음
- 올해에는 '지역이 강한 나라, 균형 잡힌 대한민국'을 주제로 균형마당, 혁신마당, 정책마당 3개의 주요 프로그램으로 구성
 - 균형마당에서는 시·도별 대표 성공 사례를 전시하고 이를 통해 변화하는 지역 발전 모습을 공유
 - 혁신마당에서는 국내외 지역혁신 활동가들을 초청해 지역혁신을 통해 달라지는 주민의 삶을 공유·체험
 - 정책마당에서는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균형발전 정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
- 이번 박람회는 처음으로 충청권에서 열림
- 산업부는 과학의 도시이자 미래의 도시로 알려진 대전에서 치러지는 박람회가 지역혁신과 균형발전에 다양한 과학기술을 접목해 시너지를 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

3. 지자체 18 곳, 지방세 비율 높이면 오히려 재정 수입 줄어

01

개요

보도형식	언론기사	보도일자	2018.07.11
보도대상	전국	보도매체	연합뉴스

02

주요내용

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8 대 2 에서 7 대 3 으로 조정하면 오히려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재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연구 결과

-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 일 ' 국세 지방세 비율 조정에 따른 지방교부세 변화 분석과 지방재정 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 방향 ' 용역보고서를 공개
 - 국세 비율이 낮아지면 국세에 연동된 지방교부세도 함께 줄어드는 만큼 교통에너지환경세 내국세 전환,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분석
- 문재인 정부는 실질적인 지방재정 분권 실현을 위해 현재 8 대 2 인 국세 · 지방세 비율을 7 대 3 을 거쳐 6 대 4 까지 조정하는 안을 추진
 - 이를 위해 지방소비세 비중과 지방소득세 규모를 확대하고 지방교부세를 인상,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대 등을 추진할 방침
- 보고서는 국세를 일부 지방으로 이양하는 방식으로 국세 대비 지방세 비율만 높이면 교부세 의존도가 큰 18 개 지자체는 재정 수입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
 - 지방세 비율을 높여 국세가 줄어들면, 국세 중 내국세에 연동돼 지자체로 흘러가는 지방교부세가 감소하기 때문
 - 지방교부세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필요 재원을 모두 조달할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해 국세 중 내국세의 19.24% 를 지방 행정에 보조하는 제도
- 국세 · 지방세 비율이 7 대 3 으로 조정되면
 - 강원도에서는 철원 · 양구 · 인제 등 3 개 지자체의 재정 수입이 약 12 억원 감소
 - 전북은 진안 · 장수 · 임실 등에서 약 13 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
 - 경북은 의성 · 영양 등에서 약 15 억원의 세수 감소 예측
 - 전남은 곡성, 구례, 고흥, 보성, 장흥, 해남, 함평, 완도, 진도, 신안 등 가장 많은 10 개 지자체에서 세수 감소 (총 111 억원)
 - 경기도, 충청, 경남에서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지자체는 없음
-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지자체 내에서도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균형 발전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음
- 이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 중 하나로 올해 일몰이 예정된 교통에너지환경세를 개별소비세로 전환하는 안을 제시
 -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라 휘발유 · 경유를 구매할 때 별도로 부과되는 소비세의 일종
 -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지출이 정해진 목적세로 분류되기 때문에 개별소비세와 달리 내국세에 포함되지 않음, 결국 내국세에 연동된 지방교부세 재원에서도 제외
- 재정 여력이 높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공동재원을 신설하는 안도 제시
 - 재정수입액을 재정수요액으로 나눈 재정력 지수가 일정 비율을 초과한 지자체의 추가 세수를 공동재원으로 해 교부세와 통합 운영하는 안
- 지방소득세의 최고구간 세율을 인상하거나 ' 부동산교부세 ' 로 지자체에 배분되는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안도 제시

1. 국내 복귀기업 경제자유구역 혜택 수도권 족쇄 'IFEZ' 찬밥신세 ?

01

개요

보도형식	언론기사	보도일자	2018.07.04
보도대상	전국	보도매체	경기일보

02

주요내용

■ 정부, 관련법 시행령 개정 박차 (외투기업 수준 세제·자금지원), 인천경제자유구역 수정법 발목

- 정부가 해외에 진출했다 국내로 돌아오는 복귀기업이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할 경우 현행 외국인투자기업과 같은 세제·자금지원 혜택을 부여하는 관련법 시행령 개정
- 인천경제자유구역 (IFEZ) 이 여전히 수도권 규제에 묶인 탓에 국내 복귀기업 유치는 쉽지 않을 것으로 우려
- 4 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지난 4 월 현재 경제자유구역 입주 외투기업에 한해 지원되는 세제혜택·자금지원을 국내복귀기업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면서 후속조치로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개정이 진행 중
 -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복귀기업 선정요건과 절차를 정하고, 세제 및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정비하는 차원
 - 시행령이 개정되면 입주 국내복귀기업은 국가 균형발전과 고용창출 규모, 경제자유구역별 중점 투자업종 등을 고려해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로 선정
 - 산자부는 관계부처 협의와 규제심사,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9 월께 차관·국무회의를 통과한 뒤 오는 10 월 18 일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
- 그러나 국내복귀기업의 IFEZ 입주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음
 - 대표적인 수도권 규제로 꼽히는 '수도권정비계획법' 에 따라 공장 연면적 500 m² 이상 기업이나 기업분류상 대기업은 IFEZ 에 입주할 수 없는 탓에 대상 기업이 한정됐기 때문
- 국내 복귀 의사를 가진 해외 진출기업의 IFEZ 입주를 위해 경제자유구역만이라도 규제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음
-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
 - 정부가 경제자유구역과 자유무역지역의 국내기업 역차별문제 해소를 공언하고 있지만, 비수도권 지역 주장이 강해 수도권 경제자유구역·자유무역지역이 계속 차별받고 있음
- 인천경제청 한 관계자
 - 중국 진출 기업이나 첨단·바이오분야 기업을 IFEZ 유치 대상으로 잠정적으로 정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유치계획을 수립하지는 않은 상태
 - 수도권 규제 문제가 해결되진 않았지만, 가능한 범위 안에서 국내복귀기업 유치활동에 나설 계획을 갖고 있음